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 년 6 월 1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스타퀘스트자산운용(주)
(영문명) StarQuest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eurekainves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405호(여의도동, 대오빌딩)
(전 화) 02-6954-1962

대 표 이 사 : 장 수 진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심 성 보 (전 화) 02-6954-1963

작 성 자 : (직 책) 주임
(성 명) 박 해 완 (전 화) 02-6954-1965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7호)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	변경전	최대주주명	장수진 외 7명
		소유주식수(주)	202,400
		소유비율(%)	38.82
	변경후	최대주주명	장수진 외 8명
		소유주식수(주)	222,400
		소유비율(%)	42.65
2. 변경사유		주식 양수도	
3. 지분인수목적			
- 인수자금 조달방법			
-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4. 변경일자		2023년 5월 31일	
5. 변경확인일자		2023년 5월 31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세부변경내역】

성명 (법인)명	관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장수진	최대주주	78,000	14.96	78,000	14.96	본인
길홍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000	0.96	5,000	0.96	최대주주 장수진의 형부
허관욱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000	0.96	5,000	0.96	최대주주 장수진의 외삼촌
문점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000	0.96	5,000	0.96	최대주주 장수진의 외숙모
김영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000	0.38	2,000	0.38	최대주주 장수진의 고모부
장혜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000	0.96	5,000	0.96	최대주주 장수진의 자(姊)
시마글로벌 파트너스(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2,400	13.89	72,400	13.89	최대주주 장수진의 내국법인
유레카 어소시에이츠(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0,000	5.75	44,000	8.44	최대주주 장수진의 내국법인
허연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6,000	1.15	최대주주 장수진의 모(母)

<기재상의 주의>

- 주1) 최대주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최대주주명”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
- 주3) “소유주식수”는 변경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주4) “소유비율”은 변경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 주5)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 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3. 인수목적(인수자금 조달방법,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포함)”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주6) 【세부변경내역】은 변경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변경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
- 주7) “관계”는 변경전 최대주주,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변경전·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
예시)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 주8)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
- 주9)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